

# 2022학년도 제1차 〈제356차 이사회 회의록〉

2022. 5. 19.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22학년도 제1차

### <제35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22. 5.19.(목) 07:30 ~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5월 11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펠리아룸(2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김영래  
최기주, 김선용, 최성민 (12인)
- 감사 : 임종인, 윤경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교무처장 손정훈, 기획처장 강민철, 총무처장 권순정, 재무회계팀장 엄일중  
의료원장 박해심, 병원장 한상욱,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행정부원장 임홍식,  
의료원 재무회계팀장 이재권 (9인)
-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이수훈, 행정처장 최종범 (2인)
- 법인사무처: 사무처장 박재호, 기획팀장 김종현, 신창규 (3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아주대학교, 아주대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의 순서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선용

이 사

3/12

## 7. 심의내용

###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명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교명 변경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수훈 : 2021년 전공심화과정, 2022년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학사·학사·석사의 다양한 학제를 운영함에 따라 교명 변경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아주자동차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4월 기준 전체 135개의 전문대학 중 126개교가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경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성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명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자동차대학 교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아주자동차대학	아주자동차대학교

###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수훈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유지충원율 등을 점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입학정원은 2022학년도 450명 대비 2023년 40명, 2024년 20명 등 총 60명을 감축하고자 하며,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입학정원 60명은 모집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전문학사 모집정원 중 75명은 신설되는 미래모빌리티공학부에 배정하였으며, 이는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과 연계되는 학부이며, 사업 미선정시 모집정원 75명을 미래자동차 공학부 모집정원으로 환원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은 전국평균 수준이나, 적정규모화 계획이 적용될 경우 향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웅

- 2 -

이사

3/12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상 협** :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등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자동차대학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 승인 내용

구분	과정(학부)	학생수(명)					비고	
		현황		적정규모화 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입학정원 (A=B+C) (감축 인원)	494	450	410	390	390		
	모집정원 (B)	494	445	350	330	330		
전문	미래자동차공학부	494	430	255	235	235		
학사	미래모빌리티공학부	-	-	75	75	75	예정 <sup>주1)</sup>	
석사	미래자동차공학부	-	15	20	20	20		
	입학정원 모집유보 (C)	-	(5)	60	60	60		

주1) 교육부『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과 연계되는 학부이며 사업 선정시 신설, 미선정시 모집정원 75명을 미래자동차공학부 입학정원으로 환원

### 제 3 호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수훈** : 자금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자금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9,111백만원으로 예산대비 98.6%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따른 등록금 수입 및 생활관 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수입이 전년대비 6.8% 감소하였습니다. 지출합계는 9,111백만원으로 운영지출 8,414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9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 362백만원, 고정부채상환 10백만원이며, 차기이월자금은 2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윤경식** :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은 감사결과,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자금수지와 재무성과,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21회계연도 업무감사에서 아주자동차대학에 대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통

이사 31777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영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21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과목명	금액	구성비	과목명	금액	구성비
운영수입	8,608	94.5%	운영지출	8,414	92.3%
등록금수입	5,063	55.6%	보관리운영비	3,617	39.7%
전입 및 기부수입	2,720	29.9%	연구학생경비	2,044	22.4%
교육부대수입	660	7.2%	교육외비용	2,720	29.8%
교육외수입	165	1.8%		33	0.4%
투자와기타자산수입	47	0.5%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9	0.8%
고정자산매각수입	10	0.1%	고정자산매입지출	362	4.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446	4.9%	고정부채상환	10	0.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56	2.8%
합계	9,111	100.0%	합계	9,111	100.0%

## 제 4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사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정성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신설되었으며, 외부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을 두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위원수를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들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제99조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행동강령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근거 조문을 마련하는 형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행동강령은 추후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따른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는 내용을 제75조 제5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용  
- 4 -

이사 이기현

또한, 의료원 직제와 관련, 의료원 산하 현대아주의원의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대아주의원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부지 내 신축건물인 산업보건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개설 변경 신고와 관련 보건소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 공개에 관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교직원 임용 시 임원과의 친족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며, 공개서식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신회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박상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46조 (임용)</b> ① (생략) ② 총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임할 수 있다.</p> <p>1. 아주대학교 총장 4년 2. 아주자동차전문대학 총장 3년 ③ 총장 이외의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고 총장의 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원의 임용권 중 동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p> <p>1.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 2. 면직 중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 3. 강사의 임용 ④ 대학교의 교무(校務)부총장, 의무(醫務)부총장, 산학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 포함), 학장, 처장, 부속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p>	<p><b>제46조 (임용)</b> ① (생략) 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22

현 행	개 정
<p>력실장, 정보혁신실장, 병원 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사망·정년 및 법률에 의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은 이사장이 면직한다.</p> <p>⑤ 전문대학의 처장은 이사장이 임용한다.</p> <p>⑥ 제1항 및 <u>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총장은 <u>제2항제2호</u>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용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u>제2항</u>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⑥ 제1항 및 <u>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총장은 <u>제3항제2호</u>의 단서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용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u>제3항</u>의 교원 외에 특별임용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종류 및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b>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b> ① 교원징계 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u>7인</u>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법인 이사 <u>6인</u></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u>1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li> <li>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li> <li>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li> </ul> </li> </ul> <p>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교원인 경우는 총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b>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b> ① 교원징계 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u>9인 이상 11인 이하</u>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학교 교원 또는 법인 이사 <u>&lt;삭제&gt;</u></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u>2인 이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li> <li>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li> <li>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li> </ul> </li> </ul>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⑤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길선동

이사

허기현

현 행	개 정
<p>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li>5. 제78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ol>	<p>⑥ (현행과 같음)</p>
<p><b>제75조 (징계의결)</b>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명권자에게</u> 통고하여야 한다.</p> <p>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b>제75조 (징계의결)</b>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명권자 및 관할청에</u> 통고하여야 한다.</p> <p>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임명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b>제92조 (의료원)</b> ①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통합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p> <p>② 의료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진료 및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p>	<p><b>제92조 (의료원)</b>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웅

이사

3177

현 행	개 정
<p>③ 의료원에는 첨단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을 두고,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두며, 병원장, 첨단의학연구원장, 진료부원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정보혁신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행정부원장은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p> <p>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p> <p>1. 현대아주의원 &lt;삽입&gt;</p> <p>⑥ 의료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 자체규정으로 정한다.</p> <p>⑦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p>	<p>⑤ 의료원에는 필요한 각호의 의원을 둘 수 있다.</p> <p>1. 현대아주의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산업보건센터 1층, 2층)</p> <p>⑥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u>제8장 보 칙</u> <u>&lt;신설&gt;</u>	<u>제8장 보 칙</u> <u>제99조 (청렴의무 등) ①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및 산하기관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폐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u>
<u>제9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u>	<u>제100조 (설립당초의 임원) (현행과 같음)</u>
	<u>부 칙</u> <u>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6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한다.</u>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31/12/27

## 제 5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현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7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위원수를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을 추가하여 9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학교의 장 추천자 두 분 중 한 분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추천 순위를 적어 주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수훈** : 사립학교법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性)의 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여성 후보자인 손미석 조교수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총장 추천자 중 손미석 조교수를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외부위원 1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신 최희경 교수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3년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희경 교수를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자동차대학 손미석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최희경 교수를 2022년 6월 1일부터 각각 임기 1년, 임기 3년의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6 호 의료원 병원 신관 및 첨단의학관 신축 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병원 신관 및 첨단의학관 신축 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병원 신관 및 첨단의학관 신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상·응급·감염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과 연계하고, 준공된 지 각각 32년, 29년이 된 의과대학 송재관 및 병원 본관의 리모델링을 대비한 버퍼 공간을 확보하여 진료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병원 신관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공간 및 교수연구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첨단의학관이 완공되면 이러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고, 우수한 인력 확보와 연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신관은 지하 3층, 지상 14층의 연면적 16,062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첨단의학관은 지하 1층, 지상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선용

이    사

3/17/22

10층의 연면적 2,916평 규모로 Wet-lab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추정 소요예산은 지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파워플랜트 이전 비용을 포함 3,102억원이며, 기존 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의 재배치를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자금은 약 1,616억원이며 나머지는 리스 등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정책병상 증설 규모는 총 275병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상 증설 시 세 계적 규모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이 가능해지며 아주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 남부권역 중증외상, 응급, 감염병 치료에 있어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향후 금리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계획하고 차입금 비율이 경영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    김    성 :** 의료 수익성이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궁금하고, 첨단의학관을 보시면 지하 1층 규모로 계획하셨는데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층을 더 가져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사실, 우리 병원의 주차장 확보 비율은 전국 상급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하층을 더 가져가게 되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미 주차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며, 이후 진행될 교통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지자체와는 협의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병원 신관 및 첨단의학관 신축 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의료원 병원 신관 및 첨단의학관 신축 승인 주요 내용

구분	병원 신관	첨단의학관
건축 면적	약 1,270평	약 276평
건축 연면적	약 16,062평 (Power Plant 약 1,336평 포함)	약 2,916평
규모	B3 ~ 14F	B1 ~ 10F
총 추정 소요예산	310,227백만원	

주1) 상기 건축 연면적 및 규모, 총 추정 소요예산은 공공정책병상 증설 승인 규모, 설계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총 추정 소요예산은 파워플랜트 이전, 기존 외상-응급의료센터 재배치, 주차장 비용 등 포함.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    선    동

이    사

3/17/23

## 제 7 호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행정부원장 임홍식 : 부속병원의 2021학년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21회계연도 의료수익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212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4.5% 증가한 7,069억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6,341억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64.3% 증가한 728억원으로 의료이익률은 10.3%입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전출 전 당기순이익은 의료외손익을 합쳐 802억원이 되겠으며, 임상교원인건비, 의대운영비, 규모확대전출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39억원을 전출하여 6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2월 말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자산총액은 규모확대전출금 증가 등에 따른 예금감소, 미래관 신축 및 의료장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0.01% 증가한 3,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약품 및 진료재료대 증가, 진료선수금 감소, 리스차입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6% 감소한 2,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 총액은 당기순이익 및 기본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9% 증가한 1,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면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윤경식 :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은 감사결과,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21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1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지적사항은 적절히 필요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 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성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풍

- 11 -

이사 31127

## ■ 2021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 손익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당해연도 구성비	전년대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의료수익	706,929	100%	617,469	100%	89,460 14.5%
의료비용	634,070	89.7%	573,115	92.8%	60,955 10.6%
인건비	266,789	37.7%	246,260	39.9%	20,529 8.3%
재료비	251,754	35.6%	224,355	36.3%	27,399 12.2%
관리비	115,527	16.3%	102,500	16.6%	13,027 12.7%
의료이익	72,859	10.3%	44,354	7.2%	28,505 64.3%
의료외수익	41,680	5.9%	36,938	6.0%	4,742 12.8%
의료외비용	34,296	4.9%	31,231	5.1%	3,065 9.8%
경상이익	80,243	11.4	50,061	8.1%	30,182 60.3%
고유목적사업비	73,919	10.5	60,002	9.7%	13,917 23.2%
당기순이익	6,324	0.9%	-9,941	-1.6%	16,265 163.6%

## 제 8 호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사장 :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이사장 : 참고로 의료원 교원의 경우, 신규 TO에 대한 정원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아주대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2023학년도 신임교원 초빙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중도퇴직 교원의 증가, 2022년 1학기 미충원 인원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재학생 수 급감으로 전년도에 감원했던 정년트랙 2명, 비정년트랙 1명 등 총 3명에 대한 배정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인재 육성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학과와 교육부의 중점사업 분야에 TO를 정책적으로 배정하고, 정량지표를 활용한 공개 공모제를 통해 학교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학과에 TO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임교원의 중도 퇴직 발생 시 결원 TO에 대한 운용방안 개선안입니다. 최근 첨단학과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퇴직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중도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TO는 일단 소멸시킨 후 차년도 채용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원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정도 후에 충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TO를 소멸시키지 않고 TO를 재배정하되, 교수초빙위원회에서 상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엄정한 평가를 통해 학과에 TO를 분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선발 시기를 앞당겨 우수 인력 확보 경쟁에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신임교원 충원계획 인원은 정년퇴직 TO 15명과 2022학년도 미신청 TO 3명을 포함 정년트랙 17명과 비정년트랙 1명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퇴직 교원 명단, 교원관련 주요 지표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상협 : 모든 대학들이 노력하고 있고 학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수 교원 초빙입니다. 내부감사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반적으로 승진 및 재임용 연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동

이사

2023

구실적 기준이 타 대학과 비교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 대학 순위에 있어 중요한 지표인데,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수준이 이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현재의 수준을 세밀하게 짚어보고 목표 수립과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전체가 발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쟁 대학 동일 학과와의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 대학 해당 학과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명한 학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과에 대한 교원 TO배정은 학과 목표와 성취 여부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본부는 비교데이터를 근거로 전체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처장 강민철 :**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과평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일보대학평가 대상 대학들과 비교한 학과평가 결과는 교원 TO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사 신상협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임종인 :** 우수 교원 영입에 있어 특히 공대 교수님들의 경우 연구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연구비는 과제 수행을 통해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가의 연구장비 또는 우수한 대학원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 교수를 모셔오는 경우 입시에도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기에 지원정책 등을 고려한 영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문길주 :** 대학 교수가 정부출연기관보다 선호하는 직위이고 학교 위치도 수도권으로 편찮은데, 교원 공모 시 경쟁률은 제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총장) 최기주 :** 사회 전반적으로 교수직에 대한 매력이 감소 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타 대학과의 상대적인 연봉 수준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임 이후 교수님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리텐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신상협 :** 대학 교수들의 경우 수당 등 계산 방법이 상이하고 공개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어 연봉 수준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리텐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공계열의 경우 랩 등의 연구공간 등 지원 정책을 분명히 하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링크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몇 개의 학과를 지원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이영현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9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강민철 :** 먼저, 기존 대외협력실 산하에 편성된 대학발전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의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김선홍

- 13 -

이사



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원화하고자 합니다. 총장직속기구인 대외협력실은 폐지하고,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협력 및 기금모금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대학발전팀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교내외 홍보 및 브랜드 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총장직속기구로 홍보실을 신설하고 기존 커뮤니케이션팀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규정을 반영하여 산학협력단 부단장 보직의 근거를 아주대학교 직제규정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야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장을 특별임용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성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성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5조(기구)</b> ① 내지 ⑦ (생략) ⑧ 총장직속기구로 <u>대외협력실</u>,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공유단 및 인권센터를 둔다.</p> <p>⑨ 내지 ⑩ (생략)</p> <p><b>제11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b> ① 연구기관에는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u>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u></p> <p><b>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b> 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b>제5조(기구)</b>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 ⑧ 총장직속기구로 <u>대학발전본부</u>, <u>홍보실</u>,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혁신공유단 및 인권센터를 둔다.</p> <p>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연구기관 및 지원기관)</b> ① 연구기관에는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u>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특별임용교원을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u></p> <p><b>제11조의 2(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b> ①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lt;간서명란&gt;</p> <p>이사장 <u>추호석</u></p>	<p>이사 <u>김선웅</u></p> <p>이사 <u>2/17/27</u></p>
	<p>- 14 -</p>

현 행	개 정
<u>〈신 설〉</u>	
② 내지 ⑤ (생 략)	<p>②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③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생 략) ② 대외협력실은 기금모금 업무 및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둈다.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학발전본부는 대외기관과의 협력 및 기금 모금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학발전팀을 두며, 홍보실은 대학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p>
③ 내지 ⑨ (생 략)	<p>③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p>⑩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⑩ 대외협력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대외협력실의 경우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	<p>⑪ 홍보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홍보실의 경우 특별임용교원이나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⑪ 내지 ⑯ (생 략)	<p>⑫ 내지 ⑯ (현행과 같음)</p> <p>⑯ 대학발전본부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은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⑯ 대외협력실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은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p>⑰ 내지 ⑯ (현행과 같음)</p> <p>⑯ 대학발전본부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은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⑯ 대학발전본부의 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은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p>⑲ 내지 ⑯ (현행과 같음)</p> <p>⑯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⑯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p>⑳ 내지 ⑯ (현행과 같음)</p> <p>⑯ 대학발전본부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u>부 칙</u>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 제 10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수를 9명으로 운영하고, 이사 3명, 학교장 추천 교원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    사    김선흥

이    사

3/17/23

**이사장 :** 먼저,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는 문길주 이사님, 김성 이사님, 박상일 이사님께서 징계위원회를 맡아 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올해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사 문길주,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승낙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에 대해 찬성하다.)

**이사장 :** 다음은 학교의 장 추천자 여덟 분 중 네 분의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추천 순위를 적어 주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손정훈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성비요건 충족을 위해 여성 후보자 3명, 남성 후보자 1명을 추천드리며,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총장 추천자 중 전경근, 강지혜, 박미화, 백은주 교수를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사장 :** 외부위원은 아주자동차대학과 마찬가지로 이화여자대학교 최희경 교수를 선임하여 기존 신경식 위원과 함께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최희경 교수를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선임 · 의결하다.)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문길주, 김성, 박상일 이사와 전경근, 강지혜, 박미화, 백은주 교수를 2022년 6월 1일부터 임기 1년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최희경 교수를 2022년 6월 1일부터 임기 3년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11 호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이사장 :**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총무처장 권순정 :** 아주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총액은 각각 2,924억원으로 전년 총액 2,646억원 대비 2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수입은 2,393억원으로 등록금및수강료수입이 1,248억원, 전입금수입이 674억원, 기부금수입이 38억원, 국고보조금수입이 263억원으로 등록금과 전입금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약 266억원으로 임의기금인출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일신관 및 혜강관 건설을 위한 건축기금 인출 178억원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정부채입금 중 장기차입금이 81억원으로 혜강관 건설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기채이며, 학생회관 푸드코트와 일신관 CU편의점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수입이 1억원으로 총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31713

8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182억원으로 총 자금수입 합계액은 2,9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항목입니다. 운영지출은 보수가 1,297억원, 관리운영비 242억원, 연구비 67억원, 학생경비·입시관리비 623억원으로 지출 중 보수 및 학생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은 약 209억원으로 임의기금적립지 출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매입지출 280억원, 유동부채상환 10억원, 고정부채상환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192억원으로 의과대학 연구비 등 26억원, 일신관 및 혜강관 공사비 5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자금지출 합계액도 2,9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28일 현재 교비회계 자산총액은 3,403억원, 부채총액 776억원, 기본금총액은 2,6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총수익은 2,395억원으로 현물기부금 1.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2,362억원으로 감가상각비 12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금대체액 약 210억원, 운영차액대체액 약 266억원을 반영한 당기 운영차액은 약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윤경식** :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은 감사결과,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자금수지와 재무성과,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한 2021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지적사항은 적절히 필요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 지적사항은 나누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이영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통

이사

3/17/23

## ■ 2021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과목명	금액	구성비	과목명	금액	구성비
운영수입	239,336	81.9%	운영지출	223,193	76.3%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124,750	42.7%	보수	129,695	44.4%
전입금수입	67,439	23.1%	관리운영비	24,189	8.3%
기부금수입	3,844	1.3%	연구비	6,681	2.3%
국고보조금수입	26,287	9.0%	학생경비, 입시관리비	62,317	21.3%
교육부대수입	13,538	4.6%	교육외비용	311	0.1%
교육외수입	3,478	1.2%	전출금, 예비비	0	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26,674	9.1%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0,954	7.2%
기타자산수입	64	0.0%	기타자산지출	0	0.0%
임의기금인출수입	26,610	9.1%	임의기금적립	20,954	7.2%
고정자산매각수입	0	0.0%	고정자산매입지출	28,006	9.6%
			유동부채상환	1,000	0.3%
고정부채입금	8,200	2.8%	고정부채상환	50	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155	6.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9,162	6.6%
합계	292,365	100.0%	합계	292,365	100.0%

## 제 12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사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현재 공석인 약학대학장에 대해 총장의 제청을 받아 박영준 교수를 2022년 6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합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이영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최성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직명	소속	직급	성명	임기	비고
약학대학장	약학과	교수	박영준	2022. 6. 1. ~ 2024. 5.31.(2년)	신임

<간서명란>

이사장

노호석

이사 김선흥

이사

김선흥

## 제 13 호 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사무처 내 보직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상임이사 및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산하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고자 3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사무부처장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TF형태로 운영 중인 수익사업파트를 편제에 반영하여 사업운영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사업운영팀은 기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영    래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7조(법인사무처) ① 법인사무처에 사무처장 <u>〈삽입〉</u>을 둘 수 있으며, 3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법인사무처에는 기획팀, 관리팀 <u>〈삽입〉</u>을 두며, 팀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u>〈단서 신설〉</u></p> <p>③ 팀장은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④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이 유고시에는 <u>선임 팀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법인사무처) ① 법인사무처에 사무처장 및 사무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3급 이상의 일반직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법인사무처에는 기획팀, 관리팀, <u>사업운영팀</u>을 두며, 팀장은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단, <u>사업운영팀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원으로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사무처장이 유고시에는 <u>사무부처장, 선임 팀장의 순으로</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법인의 장·단기 계획 수립</li></ol>	<p>제8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법인의 장·단기 계획 수립</li></ol>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    선    용

이    사

31712

현 행	개 정
<p>2.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업무</p> <p>3. 감사기획 및 실행 업무</p> <p>4. 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p> <p>5.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업무</p> <p>6. 위 각호에 수반하는 업무</p>	<p>2. 〈작 제〉</p> <p>3. 감사기획 및 실행 업무</p> <p>4. 법인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p> <p>5.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업무</p> <p>6. 위 각호에 수반하는 업무</p>
<p><u>제9조(관리팀)</u>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p> <p>1. 법인 및 산하기관의 예·결산 및 경영분석 업무</p> <p>2. 산하기관의 세무지도 업무</p> <p>3. 법인 재산의 관리 업무</p> <p>4. <u>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u></p> <p>5. 위 각호에 수반하는 업무</p>	<p><u>제9조(관리팀)</u> 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p> <p>1. 법인 및 산하기관의 예·결산 및 경영분석 업무</p> <p>2. 산하기관의 세무지도 업무</p> <p>3. 법인 재산의 관리 업무</p> <p>4. 〈작 제〉</p> <p>5. 위 각호에 수반하는 업무</p>
<u>〈신 설〉</u>	<p><u>제10조(사업운영팀)</u> 사업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p> <p>1. 신규사업 개발에 관한 업무</p> <p>2. 수익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p> <p>3. 위 각호에 수반하는 업무</p>
<p><u>제10조(수익사업) (생 략)</u></p> <p><u>제11조(업무분장) (생 략)</u></p>	<p><u>제11조(수익사업) (생 략)</u></p> <p><u>제12조(업무분장) (생 략)</u></p>
	<p><u>부칙</u></p> <p>(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 제 14 호 2021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이    사    장 : 2021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김선용 : 먼저, 자금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자금 수입 및 자금지출 총계는 각각 154,380백만원입니다. 수입 주요사항으로 부산 온천동상가 매각에 따른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50,600백만원이 있으며, 지출 주요사항으로 법정부담금 및 경상비 전출금 12,078백만원, 부속병원 별관 증축 자금 4,748백만원, 수익용건물 처분 대금의 수익용예금예치 56,058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입니다. 2022.2.28. 현재 자산총액은 536,593백만원, 부채총액은 52,119백만원, 기본금총액은 484,474백만원입니다. 유동자금은 운영수지 27,683백만원, 부속병원 별관 증축과 제1주차장 건축비용 지원 6,155백만원 및 요양병원 출자금 1,000백만원 등 총 7,155백만원 감소, 차입금 상환에 따른 1,096백만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159백만원이 증가한 72,5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김 선  용

이    사    

3/1/2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입니다. 운영수익은 98,497백만원, 운영비용 22,270백만원, 기본금 대체액 61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6,9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재호 :** 2021회계연도 장례식장 결산(안)입니다. 먼저, 자금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례식장 회계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은 각각 10,914백만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장례식장운영수입 6,008백만원, 임대료수입 2,940백만원 등 운영수입은 8,987백만원이며, 일반회계전출금 5,600백만원 등 운영지출은 8,517백만원입니다. 미사용차기이월 자금은 2,3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입니다. 2022.2.28. 현재 자산총액은 13,264백만원, 부채총액 686백만원, 기본금 총액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인 76백만원이 증가한 12,5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운영수익은 8,987백만원, 운영비용은 8,911백만원, 당기운영차액 76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재호 :** 2021회계연도 요양병원 결산(안)입니다. 먼저, 자금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요양병원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 총계는 각각 20,817백만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의료수입 등 운영수입은 17,826백만원이며, 기본금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지출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17,549백만원이며,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1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입니다. 2022.2.28. 현재 요양병원 자산총액은 82,266백만원, 부채총액은 7,647백만원, 자본총액은 74,61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요양병원의 의료수익은 17,313백만원, 의료비용은 20,088백만원으로 의료이익은 -2,775백만원이고, 의료외수익 167백만원, 의료외비용 156백만원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2,76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윤경식 :**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은 감사결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와 2021회계연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를 각각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한 성현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법인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으로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의무 기준에 따른 2021회계연도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117.1%로 전년도 87.2%보다 증가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수익률은 법정수익률인 1.7%를 초과한 4.4%입니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한 부담률은 법정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길선웅

- 21 -

이사

312127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박상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신희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21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21학년도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 자금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부속 병원 전 입 금	28,891	18.7%	보 수	1,695	1.1%
수익 사업 전 입 금	5,600	3.6%	시 설 관 리 비	341	0.2%
지정 기부 금	6,480	4.2%	일 반 관 리 비	340	0.2%
예금 이자 수 입	898	0.6%	운 영 비	453	0.3%
임대료 수 입	1,681	1.1%	지 급 이 자	1,304	0.9%
관리비 수 입	272	0.2%	전 출 금	12,078	7.8%
잡 수 입	72	0.0%			
운영 수 입	43,894	28.4%	운영 지 출	16,211	10.5%
투자유가증권매각대	47	0.0%	설치 학 교	4,748	3.1%
수익 용 예금 인 출	5,414	3.5%	투자유가증권매입대	480	0.3%
임의 퇴직기금 인 출	743	0.5%	출자금 지 출	1,000	0.7%
			부속 병원 투자지 출	1,407	0.9%
			수익용 예금 예치	56,058	36.3%
			임의 퇴직기금 적립	61	0.0%
투자와기타자산수입	6,204	4.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3,754	41.3%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50,600	32.8%	고정자산 매입지 출	126	0.1%
임대보증금 수 입	175	0.1%	단기차입금 상환	1,096	0.7%
			임대보증금 환급	525	0.3%
자산 및 부채 수 입	50,775	32.9%	자산 및 부채 지 출	1,747	1.1%
미사용전기이월자금	53,507	34.7%	미사용차기이월자금	72,668	47.1%
합 계	154,380	100.0%	합 계	154,380	100.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봉

이사 31/12

## ■ 2021학년도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결산 자금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장례식장 운영수입	6,008	55.0%	직원보수	704	6.5%
임대료수입	2,940	26.9%	시설관리비	58	0.5%
관리비수입	13	0.1%	일반관리비	506	4.6%
잡수입	10	0.1%	운영비	846	7.7%
예금이자수입	16	0.2%	재료비	803	7.4%
임대보증금수입	0	0.0%	일반회계전출금	5,600	51.3%
비품매각대수입	0	0.0%	잡손실	0	0.0%
운영수입	8,987	82.3%	운영지출	8,517	78.0%
			유형고정자산매입	31	0.3%
			고정부채상환	20	0.2%
자산 및 부채 수입	0	0	자산 및 부채지출	51	0.5%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927	17.7%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346	21.5%
합계	10,914	100.0%	합계	10,914	100.0%

## ■ 2021학년도 수익사업회계(요양병원) 결산 자금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구성비	과 목	금 액	구성비
의료수입	17,313	83%	인건비	10,175	49%
의료외수입	513	3%	재료비	1,533	7%
-	-	-	관리비	5,132	25%
-	-	-	의료외비용	709	3%
운영수입	17,826	86%	운영지출	17,549	84%
차입금수입	-	-	차입금상환	1,018	5%
기본금증가	1,000	5%	유형고정자산매입	137	1%
자산 및 부채 수입	1,000	5%	자산 및 부채지출	1,155	6%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991	9%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113	10%
합계	20,817	100%	합계	20,817	100%

## 8.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사장 :** 제356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김선용 이사, 최기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최기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선용

이사

김선용

## 9.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56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22년 5월 19일

이사장 추호석

추호석

이사 김성진

김성진

이사 문길주

문길주

이사 신희택

신희택

이사 김성

김성

이사 박상일

박상일

이사 신상협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영현

이사 김영래

김영래

이사 최기주

최기주

이사 김선용

김선용

이사 최성민

최성민

감사 임종인

임종인

감사 윤경식

윤경식